

교원업적평가 규정

- 제정 : 1999. 10. 1. 개정 : 2011. 6. 30.
- 개정 : 2000. 3. 1. 개정 : 2012. 4. 25.
- 개정 : 2001. 3. 1. 개정 : 2015. 3. 20.
- 개정 : 2003. 7. 1. 개정 : 2019. 3. 1.
- 개정 : 2007. 6. 1. 개정 : 2019. 6. 18.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과 고운학원 정관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임용 등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교원업적평가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 범위) 이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 전임교원(이하 “교원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 교수업적(이하 ‘업적’이라 한다)이라 함은 교육영역, 연구영역, 봉사영역, 산학협력영역에 관한 전반적인 실적을 말한다.

제4조(업적의 구분) ① ‘교육영역’이라 함은 수업, 강의, 학생지도 및 이와 관련된 노력과 실적을 말한다.

② ‘연구영역’이라 함은 교원의 전공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창의적 연구 및 창작활동의 결과물과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는 발표실적 또는 사회 및 학교에 기여한 연구활동의 결과를 말한다.

③ ‘봉사영역’이라 함은 교육 및 연구영역과 산학협력영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교·내외 봉사 및 근무실적과 관련된 업적을 말한다.

④ ‘산학협력영역’이라 함은 취업, 현장실습, 외부연구과제수행, 가족회사 유치 및 관리, 산업체 파견활동, 기타 산학협력과 관련된 노력과 실적을 말한다.

제5조(평가대상기간) 교원업적평가는 1년 단위로 시행하며, 평가 대상은 전년도 1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0월 31일까지 업적으로 한다.

제6조(평가제외자) 교원이 휴직, 해외파견, 직위해제 등으로 인하여 한 학기 이상의 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및 정년퇴직 예정일 기준 잔여 임용기간이 2년 이내인 교원의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. 단, 평가가 불가피한 경우는 바로 전회의 평가를 당해 년도의 평가로 활용할 수

있다.

제 2 장 평가기구

제7조(교원업적심사위원회) ① 교원업적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교원업적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서 심의한다.

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

제 3 장 평가절차 및 소명절차

제8조(심사절차) ① 총장은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매 년도 말을 기준으로 업적평정심사보조자료를 작성케 하고 이를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토록 하여 평가한다.

② 교학처장은 소속교원이 제출한 업적평정 심사보조자료와 관련 부서장의 확인 증빙자료를 근거로 전임교원 업적평정표<별첨>를 작성한 후 이를 전항 서류와 함께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한다.

③ 위원장은 서류검토 후 불합리한 사항이 발견되면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 위원장은 평가결과를 소정의 기한 내에 총장에게 보고한 후, 해당 교수에게 총점을 통보하여야 한다.

제9조(소명절차) ①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교원은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. 다만 제출서류 미비 등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, 추가로 제출된 연구실적물 등에 대해서는 다시 평가할 수 없다.

② 위원회에서는 재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조서 및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재심결과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4장 평가기준

제10조(평가점수) 교원업적에 대한 평가점수는 교육영역, 연구영역, 봉사영역, 산학협력영역으로 하여 총 100점을 기본점수로 하고, 기본점수 및 가산점수의 합계는 총 120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최종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다.

제11조(교육영역의 평가 및 기준) 교육영역은 강의부문과 학생지도 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,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전임교원 업적평정표<별첨>와 같다.

제12조(연구영역의 평가 및 기준) 연구영역은 논문 및 학술발표, 저서 및 창작, 예.체능발표, 기타 연구업적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, 부문별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전임교원 업적평정표<별첨 2>와 같다.

제13조(봉사영역의 평가 및 기준) 봉사영역은 교내활동, 교외활동, 수범활동 외에 상벌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, 부문별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전임교원 업적평정표<별첨>와 같다.

제13조의 2(산학협력영역의 평가 및 기준) 산학협력영역은 취업 및 현장실습, 외부 연구과제 수행 및 산업체 파견활동, 가족회사 유치 및 관리, 기타 산학협력업적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,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전임교원 업적평정표<별첨>와 같다.

제 5 장 평가결과 관리 및 활용

제14조(평가결과의 활용) 교원의 업적평가 결과는 당해 교원의 승진.승급, 재임용(계약제 포함) 및 각종 포상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.

제15조(평가결과 비밀유지) 평가결과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4-1-5 교원업적평가 규정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2020년도 전임교원 업적평정표

(2019.11.1 - 2020.10.31)

피평정자	성명	직급	평정자	총				
	소속	직위		정원섭 (인)				
평정영역	평정항목 및 기준			배점	특점			
					기본	가점	감점	계
학교발전기여 (가점 12점)	■ 학교발전기여: 기여도에 따라 차등 가점(상한 12점) <input type="checkbox"/> 학교발전을 위해 총장의 명을 받아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※ 연구영역 및 봉사영역 가점 상한과 관계없이 가점 적용(전체 배점인 120점 이내에만 적용)							
1. 육영역 (40점)	1-1 수업 1-1-1 강의평가 (15인 이하 강좌는 제외) <input type="checkbox"/> 강의평가 평균점수를 X 15 1-1-2 담당 수업일수(2시간 이상일 때 수업일수 1일 인정) <input type="checkbox"/> 5일 = 5점 <input type="checkbox"/> 4일 = 3점 <input type="checkbox"/> 3일 = -3점			15				
	1-2 전공(취업)동아리 지도 <input type="checkbox"/> 포털에 활동결과서 70% 이상 지도 입력시 = 2점			5				
	1-2 전공(취업)동아리 지도 <input type="checkbox"/> 포털에 활동결과서 70% 이상 지도 입력시 = 2점			2				
	1-3 재학생 총원율 [(당해년도 4/1 + 10/1 기준의 평균값)](과단위평가) * 원율 기준 : 100%에서 2% 마다 기준 부여 * 수 기준 : 1. 100%를 15점으로 정하고 평균값 이상의 경우는 2%마다 1점씩 감소 2. 평균값 미만일 경우는 2%마다 2점씩 감소 (예시-평균 총원율이 93.5%일 경우) <input type="checkbox"/> 100% 이상 = 15점 <input type="checkbox"/> 98% 이상 = 14점 <input type="checkbox"/> 96% 이상 = 13점 <input type="checkbox"/> 94% 이상 = 12점 <input type="checkbox"/> 92% 이상 = 10점 <input type="checkbox"/> 90% 이상 = 8점 <input type="checkbox"/> 88% 이상 = 6점 <input type="checkbox"/> 86% 이상 = 4점 <input type="checkbox"/> 84% 이상 = 2점 <input type="checkbox"/> 82% 이상 = 0점 <input type="checkbox"/> 80% 이상 = 0점 <input type="checkbox"/> 78% 이상 = 0점 <input type="checkbox"/> 76% 이상 = 0점 <input type="checkbox"/> 74% 이상 = 0점 <input type="checkbox"/> 72% 이상 = 0점 <input type="checkbox"/> 70% 미만 = 0점			15				
	1-4 중도 탈락율(개인 평가) <input type="checkbox"/> 3% 이하 = 3점 <input type="checkbox"/> 5% 이하 = 2점 <input type="checkbox"/> 7% 이하 = 1점			3				
	1-5 -삭제-							
	1-6 NCS, LMS, 교수법(가점, 가점 총합의 상한은 10점) <input type="checkbox"/> NCS 교과목 강의시 = 과목당 1점 (학기당 상한은 2점) <input type="checkbox"/> 과정평가형 교과목 운영시 = 과목당 1점 (상한은 2점) <input type="checkbox"/> LMS이용 강좌 운영 = 과목당 1점 (상한은 2점) <input type="checkbox"/> 신 교수법을 이용한 강좌 운영 = 과목당 1점 (상한은 4점) <input type="checkbox"/> 학습지원프로그램 운영 = 프로그램당 1점 (학기당 상한은 1점) [with you 튜터링(기초학습, 전공기초)] <input type="checkbox"/>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수지원프로그램 참여 = 0.5점 (학기당 상한은 1점) <input type="checkbox"/> 티칭포트폴리오 작성 실적 = 과목당 2점 (상한은 4점) <input type="checkbox"/> 동행학습 7주 이상 지도 = 1팀 당 0.5점 (상한은 3점)							
	1-7 전공관련 자격증 취득율(과단위 평가-가점), 국가공인자격증포함 <input type="checkbox"/> 20% 이상 = 1점 <input type="checkbox"/> 30% 이상 = 2점 <input type="checkbox"/> 40% 이상 = 3점							
	1-8 학사관리 1-8-1 성적평가시 A+ 및 A학점 비율 준수 여부 (감점) <input type="checkbox"/> 45% 이상 -1점 감점 <input type="checkbox"/> 50% 이상 -2점 감점 <input type="checkbox"/> 55% 이상 -3점 감점 <input type="checkbox"/> 60% 이상 -4점 감점 1-8-2 출석부 및 시험담안지 관리(학사관리지침에 의한 성적부여) (감점) <input type="checkbox"/> 출석부, 담안지, 평가표 보관 <input type="checkbox"/> 1항목이라도 미보관시 = -1점 <input type="checkbox"/> 성적 정정 3건당 = -1점(감점 하한 -5점) ※ 정정기간내의 성적정정은 제외 1-8-3 강의 이행상태(강의준비, 이행도) (감점) ① 강의계획서 임의 변경 실시 (1회당) = -1점 ② 강의계획서 미제출 (과목별) = -1점 ③ 무단 결강·휴강 1회당(사전 승인 제외) = -1점 ④ 보강계획서에 의한 보강 미실시(1회당) = -1점							

평정영역	평정항목 및 기준	배점	득 점			
			기본	가점	감점	계
	1-8-4 학사업무관련 제반 서류제출 및 시간표·성적 전산입력 실적 반영(연 2회 실시) (강점) ① 1-10회 지참 제출 <input type="checkbox"/> 학과장 및 학과교수 = 0점 ② 11-20회 지참 제출 <input type="checkbox"/> 학과장 및 학과교수 = -1점 ③ 21-30회 지참 제출 <input type="checkbox"/> 학과장 및 학과교수 = -2점 ④ 31회 이상 지참 제출 <input type="checkbox"/> 학과장 및 학과교수 = -3점 1-9 교외경연대회 수상 지도 (가점) <input type="checkbox"/> 전국규모대회 3위 이내 입상 = 3점 <input type="checkbox"/> 광역자치단체 규모대회 3위 이내 입상 = 1점 1-10 교내외 행사지도 (가점) <input type="checkbox"/> 학술회의, 전시회, 발표회, 졸업작품전, 기술경연대회 등 1건당 = 1점 (상한 2점)					
	소계	40	0	0	0	0
2. 구영역 (가점 10점)	■연구실적 ※ 출판 종료된 것에 한함(해당년도 출판 및 게재예정증명서 유효) ※ 점수산출 : 실적율(%) × 배점 ※ 인정비율 = 1인 : 100%, 2인 : 70%, 3인 : 50%, 4인이상 : 30%					
	2-1 저(역)서 (* ISBN(등록번호)이 부여되고, 150페이지 이상의 출판물로서, 최소 200권 이상 발행된 것에 한함. 개정판은 불인정) 2-1-1 국외 전공관련전문학술서적 <input type="checkbox"/> 100% = 10점, 초과분 = 5점 × 초과% 2-1-2 국내 전공관련전문학술서적 <input type="checkbox"/> 100% = 8점, 초과분 = 4점 × 초과% 2-1-3 편저, 역서 <input type="checkbox"/> 100% = 5점, 초과분 = 3점 × 초과%					
	2-2 논문 2-2-1 국내외 저명 학술지 (SCI(E)급) <input type="checkbox"/> 100% = 10점, 초과분 = 5점 × 초과% 2-2-2 국내 전문학술지(한국연구재단 등재 및 등재후보학회지)및 기타 국외 학술지(박사학위논문포함) <input type="checkbox"/> 100% = 8점, 초과분 = 4점 × 초과% 2-2-3 기타 국내학술지(심사위원이 있는 한국학술진흥재단 미등재학회지) <input type="checkbox"/> 100% = 5점, 초과분 = 3점 × 초과% 2-2-4 교내 논문집 <input type="checkbox"/> 100% = 4점, 초과분 = 2점 × 초과%					
	2-3 미술분야 연구(전시) 실적(팜플렛 등 증빙자료 원본제출) A : 국제 비엔날레, 국제 아트페어 및 저명 해외 갤러리 초대 개인전 <input type="checkbox"/> 1회 = 10점, 초과분 = 5점 × 초과회수 B : 국제 개인전 <input type="checkbox"/> 1회 = 8점, 초과분 = 4점 × 초과회수 C : 국내 개인전 <input type="checkbox"/> 1회 = 6점, 초과분 = 3점 × 초과회수 D : 국제 단체전(초대전) <input type="checkbox"/> 1회 = 4점, 초과분 = 2점 × 초과회수 E : 국내 단체전 <input type="checkbox"/> 1회 = 2점, 초과분 = 1점 × 초과회수					

평정영역	평정항목 및 기준	배점	득 점			
			기본	가점	감점	계
	2-4 연극 영화분야 연구실적(팜플렛 등 증빙자료 원본제출) A :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곳에서 공인된 연극 및 영화, 개인 연구 발표회 <input type="checkbox"/> 1회 = 10점, 초과분 = 5점 × 초과회수 B : 공인된 장소 연출 발표회, 국외에서 인정된 연극, 영화공연의 주요 캐스트 및 주요 스태프 <input type="checkbox"/> 1회 = 8점, 초과분 = 4점 × 초과회수 C : 국내에서 인정된 연극, 영화제 공연의 주요 캐스트 및 주요 스태프 <input type="checkbox"/> 1회 = 6점, 초과분 = 3점 × 초과회수 D : 국가 및 공공기관 주최 연극, 영화제 참가 <input type="checkbox"/> 1회 = 4점, 초과분 = 2점 × 초과회수					
	2-5 음악분야 연구실적(팜플렛 등 증빙자료 원본 제출) A :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독창회, 독주회, 협주협연, 오페라 주역, 지휘, 초연, 창작곡 발표 <input type="checkbox"/> 1회 = 10점, 초과분 = 5점 × 초과회수 B : 국내에서 공인된 독창회, 독주회, 오페라 주역, 지휘, 초연, 창작곡 발표 <input type="checkbox"/> 1회 = 8점, 초과분 = 4점 × 초과회수 C : 국내에서 공인된 협연, 2인음악회, 작품발표, 오페라 조역, 종합연주회의 중주 및 반주 <input type="checkbox"/> 1회 = 6점, 초과분 = 3점 × 초과회수 D : 시·도 주최의 독주, 독창, 지휘, 음악 연구업적, 편곡 발표, 협연 <input type="checkbox"/> 1회 = 4점, 초과분 = 2점 × 초과회수					
	2-6 체육분야 연구실적(팜플렛 등 증빙자료 원본 제출) A : 국제경기의 임원, 국제경기의 감독, 국제경기의 출전선수 입상지도(1, 2, 3위), 국제공인경기 심판 <input type="checkbox"/> 1회 = 10점, 초과분 = 5점 × 초과회수 B : 전국체전의 임원, 감독, 코치, 심판, 출전선수 입상지도(1, 2, 3위) <input type="checkbox"/> 1회 = 8점, 초과분 = 4점 × 초과회수 C : 전국대회의 임원, 감독, 코치, 심판 <input type="checkbox"/> 1회 = 6점, 초과분 = 3점 × 초과회수 D : 시도대회의 임원, 감독, 코치, 심판 <input type="checkbox"/> 1회 = 4점, 초과분 = 2점 × 초과회수					
	소계	0	0	0	0	0
3. 사활동 (20점)	■ 봉사활동 ※ 가점은 상한 총 10점까지 가산					
	3-1 입시 3-1-1 입학총원율(학과단위 평가) <input type="checkbox"/> 100% = 7점 <input type="checkbox"/> 정원에서 1% 미충원마다 7점에서 1점씩 감점 <input type="checkbox"/> 93% 이하 = 0점 3-1-2 입시설명회 및 기타 입시에 관한 출장 및 업무 협조(가점) <input type="checkbox"/> 박람회 및 고등학교 입시설명회 1회 참가시 = 1점 (최고 3점까지 인정) 3-1-3 -삭 제- 3-1-4 산업체위탁 별도반 개설학과, 또는 전공심화과정 개설학과(학과단위평가) (가점) <input type="checkbox"/> 산업체위탁 별도반개설(20명이상) = 3점 <input type="checkbox"/> 산업체위탁 별도반개설(20명미만) = 2점 <input type="checkbox"/> 전공심화과정 개설학과(20명이상) = 3점 <input type="checkbox"/> 전공심화과정 개설학과(20명미만) = 2점 3-1-5 산업체위탁생 유치 실적(가점) <input type="checkbox"/> 1인당 1점(상한5점)	7				
	3-2 평생교육원 활동(가점) 3-2-1 평생교육원 일반과정 유치 실적(가점) <input type="checkbox"/> 10명 이상 = 3점 <input type="checkbox"/> 5명 이상 = 2점 <input type="checkbox"/> 1명 이상 = 1점 3-2-2 학점은행제 학위과정 유치 실적(가점) <input type="checkbox"/> 10명 이상 = 3점 <input type="checkbox"/> 5명 이상 = 2점 <input type="checkbox"/> 1명 이상 = 1점					
	3-3 특강(가점) 3-3-1 방학중 특강 및 학기중 평생교육원 개설 과목, 계절학기 <input type="checkbox"/> 과목당 1점(학기별) 3-3-2 교내 전체 교수 또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강 = 1점					

평정영역	평정항목 및 기준	배점	득 점			
			기본	가점	감점	계
	3-4 보직교원(가점) 3-4-1 보직교원 <input type="checkbox"/> 행정처실장 = 7점 <input type="checkbox"/> 부처장, 도서관장, 전산소장, 평생교육원장 = 5점 <input type="checkbox"/> 행정과장, 국제교류원장, 방송국주간, 학보사주간, 학과장 = 3점 <input type="checkbox"/> 산학팀장(산학협력단), 센터장, 부설연구소장 = 2점 * 보직 중복 = (1점추가, 상한1점) 3-4-2 -삭 제-					
	3-5 장학금·기부금 유치(가점) * 가족회사(산학협동 업체)·기타 업체 포함 <input type="checkbox"/> 500만원 이상 = 3점 <input type="checkbox"/> 300만원 이상 = 2점 <input type="checkbox"/> 100만원 이상 = 1점 <input type="checkbox"/> 신규업체 및 2년 연속 장학금 유치 = 업체당 0.5점 (상한 3점)					
	3-6 실험·실습소모품 및 행정비품 기증(가점) * 소모품 : 1학기 이상 사용가능 품목 * 행정비품 : 3년 이상 사용가능 품목 <input type="checkbox"/> 5000만원 이상 = 3점 <input type="checkbox"/> 1000만원 이상 = 2점 <input type="checkbox"/> 500만원 이상 = 1점					
	3-7 도서기증(가점) <input type="checkbox"/> 400권 이상 = 3점 <input type="checkbox"/> 300권 이상 = 2점 <input type="checkbox"/> 200권 이상 = 1점					
	3-8 교외활동(가점, 총상한 3점) * 각 건 해당부서를 통해 사전에 결재를 득한 사항만 인정 3-8-1 정부 및 산하기관의 심사, 평가 및 자문위원 = 1기관 1점 3-8-2 정부 및 산하기관의 출제위원 - 기술국가(고시) = 1기관 1점 3-8-3 학회, 협회, 학술단체의 임원 활동 = 1점 3-8-4 사회 봉사활동 4시간당 = 1점 3-8-5 학교홍보 활동(TV출연, 신문기고, 홍보물 번역 등) 실적 = 1점 3-8-6 지역사회단체와 협약 후 활동실적 4시간 당 = 1점 3-8-7 진로체험 봉사활동 1회당 = 1점					
	3-9 수범활동 : 상황에 따라 평가 3-9-1 학과운영협조 : <input type="checkbox"/> 5점 <input type="checkbox"/> 4점 <input type="checkbox"/> 3점 * 교수평가(학과장) <input type="checkbox"/> 5점 - 50% <input type="checkbox"/> 4점 - 40% <input type="checkbox"/> 3점 - 10% 학과장평가(교학처장) <input type="checkbox"/> 5점 - 80% <input type="checkbox"/> 4점 - 10% <input type="checkbox"/> 3점 - 10% 3-9-2 학교제위원회 활동실적(가점) = 위원회 별 1점 (상한 3점까지) 3-9-3 학교 발전 저해도(감점) : 저해 정도에 따라 5점까지 감점 <input type="checkbox"/> 학교 명예훼손 <input type="checkbox"/> 교원 품의손상 <input type="checkbox"/> 제규정 위반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3-9-4 학생 지도결과 임력실적 [학기당 1인 기준 1회 / 학생 수 : 1학기(4월 1일), 2학기(10월 1일) 기준] <input type="checkbox"/> 95% 이상 = 5점 <input type="checkbox"/> 90% 이상 = 4점 <input type="checkbox"/> 90% 미만 = 0점 3-9-5 계속 심층상담 지도결과 임력실적(학기당 1인 기준 2회 이상) <input type="checkbox"/> 40% 이상 = 3점 <input type="checkbox"/> 30% 이상 = 2점 <input type="checkbox"/> 20% 이상 = 1점 3-9-6 반지도교수(가점) <input type="checkbox"/> 1개반 = 1점 <input type="checkbox"/> 2개반 = 3점 <input type="checkbox"/> 3개반 = 5점 <input type="checkbox"/> 4개반 = 7점 3-9-7 성 관련 예방교육 학생 참여지도 실적 미달(감점 학과단위 평가) <input type="checkbox"/> 학생 교육 참여 이수율 60% 미만은 -3점 3-9-8 교육만족도 조사 참여 실적(가점 학과단위 평가) <input type="checkbox"/> 부서에서 제시한 참여 기준 충족 시 = 1점	5				
	3-10 상벌 3-10-1 수상, 서훈, 표창(가점) <input type="checkbox"/> 저명 학술상 = 3점 <input type="checkbox"/> 대통령표창 이상 = 3점 <input type="checkbox"/> 국무총리, 장관, 이사장, 총장 표창 = 2점(근속관련 제외)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공공기관 단체장 상 = 1점 3-10-2 징계(감점) <input type="checkbox"/> 정직 = -4점 <input type="checkbox"/> 감봉 = -3점 <input type="checkbox"/> 견책 = -2점 <input type="checkbox"/> 허가받지 않은 해외여행 = -3점 <input type="checkbox"/> 시말서, 경위서 제출 = -1점	5				
		3				

평정영역	평정항목 및 기준	배점	특 점			
			기본	가점	감점	계
	소계	20	0	0	0	0
4. 산학협력 (40점)	<p>※ 산학협력 평가항목은 산학협력 교육활동, 산학협력 연구활동, 산학협력봉사활동을 평가함</p> <p>※ 각 평가항목에서 취득한 점수를 누진한 후 해당점수 부여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input type="checkbox"/> 총 누진점수 40점 이상 : 40점 <input type="checkbox"/> 총 누진점수 40점 미만은 취득한 점수 부여</p>	40				
	<p>4-1 산학협력 교육활동</p> <p>4-1-1 현장실습 이수율(과단위 평가)</p> <p>- 현장실습 실시학과(1군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input type="checkbox"/> 50% 이상 = 5점 <input type="checkbox"/> 50% 미만 ~ 30%이상 = 3점 <input type="checkbox"/> 30% 미만 ~ 10% 이상 = 1점 <input type="checkbox"/> 70% 이상 = 가점 2점</p> <p>- 현장실습 실시학과(2군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input type="checkbox"/> 30% 이상 = 5점 <input type="checkbox"/> 30% 미만 ~ 10%이상 = 3점 <input type="checkbox"/> 10% 미만 ~ 5% 이상 = 1점 <input type="checkbox"/> 50% 이상 = 가점 2점</p> <p>- 현장실습 실시학과(의무학과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input type="checkbox"/> 90% 이상 = 5점 <input type="checkbox"/> 90% 미만 ~ 85%이상 = 3점 <input type="checkbox"/> 85% 미만 ~ 80% 이상 = 1점 <input type="checkbox"/> 95% 이상 = 가점 2점</p> <p>※ 현장실습 이수율 = (현장실습 이수자 수 / 졸업학년도 재학생 수(4월1일기준)) x 100%</p> <p>※ 현장실습 이수자 수는 중복 인정 없음(1학기, 2학기 각각 실습에 참여한 학생은 1명으로 계산)</p> <p>※ 현장실습은 4주 이상 연속 및 120시간 이상 실시한 경우만 인정</p> <p>※ 실습 업체 협약, 실습계획서, 현장실습 순회지도 등 관련 서류 제출한 경우만 인정</p> <p>※ 현장실습 의무학과외의 경우 인증평가 기준을 충족시키고, 인증평가 관련서류로 대체 가능</p> <p>4-1-2 캡스톤디자인 과목 지도(학과단위) : 2점/건</p> <p>4-1-3 졸업작품전 참가(학과단위) : 2점</p> <p>4-1-4 창업동아리 지도 : 3점/건(교,내외 창업관련 경연대회 참가 필수)</p> <p>4-1-5 창업동아리 지도에 의한 학생창업(사업자 등록증 등 증빙서류) : 5점/건</p> <p>4-1-6 산업체 재직자 교육 : 2점/건 (학교 공문 접수건만 인정)</p> <p>4-1-7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: 개인, 학과의 경우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input type="checkbox"/> 과정운영 : 2점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input type="checkbox"/> 취업율에 따라 차등 점수 부여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① 70% 이상 = 3점 ② 70% 미만 ~ 60% 이상 = 2점 ③ 60% 미만 ~ 50% 이상 = 1점</p>					
	<p>4-2 산학협력 연구활동</p> <p>4-2-1 정부, 기업과제 등(간접비 있는 경우) : 사업참여 개인 학과의 경우</p> <p>가. 과제 신청 시 = 1점(횟수와 상관없이 1점 부여)</p> <p>나. 과제 수행(간접비 기준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input type="checkbox"/> 100만원 이하 = 2점 <input type="checkbox"/> 200만원 이하 = 3점 <input type="checkbox"/> 300만원 이하 = 4점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input type="checkbox"/> 400만원 이하 = 5점 <input type="checkbox"/> 400만원 초과 = 6점</p> <p>4-2-2 정부, 기업과제 등(간접비 없는 경우) : 사업참여 개인, 학과의 경우</p> <p>가. 과제 신청 시 = 1점(횟수와 상관없이 1점 부여)</p> <p>나. 과제 수행(사업 운영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비 5,000만원 이하 = 1점 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비 1억 이하 = 2점 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비 1억 초과 = 3점</p> <p>4-2-3 산업체와의 공동특허 출원 : 1점/건, 기술이전, 산업체와의 공동 특허 등록 : 5점/건</p>					
<p>4-3 산학협력 봉사활동</p> <p>4-3-1 기술지도, 기업체 기술자문, 경영자문, 원스톱 기업지원 후 결과물, 신기술·신제품 인증지원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기술사업화 지도(R&BD) : 1점/건 (1개 회사 다수 지도는 1건으로 인정)</p> <p>4-3-2 산학공동실습실 운영 및 기자재활용 실적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input type="checkbox"/> 1회 이상 : 1점 <input type="checkbox"/> 3회 이상 : 2점</p> <p>4-3-3 산업체 기자재 유치실적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input type="checkbox"/> 1000만원 이상 : 1점 <input type="checkbox"/> 2000만원 이상 : 2점 <input type="checkbox"/> 3000만원 이상 : 3점</p> <p>4-3-4. 교원창업(사업자 등록증 등 증빙서류) : 3점/건</p> <p>4-3-5 취업지도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※ 교양과 교수는 지도교수 해당학과 교수와 동일점수 부여 (지도 해당학과가 없는 경우에는 평균취업율의 점수를 부여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※ 졸업인원이 없는 학과(신설학과)교수는 당해년도 평균취업율의 점수를 부여함</p> <p>가. 수도권 비교학과 평균취업률 비교(12/30 건보DB실적 기준, 과단위 평가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① 수도권 비교학과 평균 취업률 이상 = 7점</p>						

평정영역	평정항목 및 기준	배점	득 점			
			기본	가점	감점	계
	② 수도권 비교학과 평균 취업률 미만 ~ -2% 미만 = 3점 ③ 수도권 비교학과 평균 취업률 대비 -2% ~ -5% 미만 = 0점 ④ 수도권 비교학과 평균 취업률 대비 -5% ~ -8% 미만 = -1점 ⑤ 수도권 비교학과 평균 취업률 대비 -8% ~ -10% 미만 = -2점 ⑥ 수도권 비교학과 평균 취업률 대비 -10% 이상 이하 = -3점 ※ 수도권 비교학과가 2개 이하인 경우 학교평균 대비 평가함. 나. 이전 3년간 취업률 비교 평가(12/30 건보DB실적 기준, 과단위 평가) - 평정 적용년도 취업률이 학교 평균 취업률 이상 학과 ① 이전 3년간 평균 취업률 대비 2% 초과 또는 평정 대상 최근 년도 취업률 80% 이상 학과 = 7점 ② 이전 3년간 평균 취업률 대비 평균 이상 ~ 2% 미만 상승 = 6점 ③ 이전 3년간 평균 취업률 대비 평균 미만 ~ -2% 미만 하락 = 3점 ④ 이전 3년간 평균 취업률 대비 -2% ~ -4% 미만 하락 = 1점 ⑤ 이전 3년간 평균 취업률 대비 -4% ~ -7% 미만 하락 = -1점 ⑥ 이전 3년간 평균 취업률 대비 -7% ~ -10% 미만 하락 = -2점 ⑦ 이전 3년간 평균 취업률 대비 -10% 초과 하락 = -3점 - 평정 적용년도 취업률이 학교 평균 취업률 미만 학과 ① 이전 3년간 평균 취업률 대비 2% 초과 또는 평정 대상 최근 년도 취업률 80% 이상 학과 = 7점 ② 이전 3년간 평균 취업률 대비 평균 이상 ~ 2% 미만 상승 = 6점 ③ 이전 3년간 평균 취업률 대비 평균 미만 ~ -2% 미만 하락 = 0점 ④ 이전 3년간 평균 취업률 대비 -2% ~ -4% 미만 하락 = -1점 ⑤ 이전 3년간 평균 취업률 대비 -4% ~ -7% 미만 하락 = -2점 ⑥ 이전 3년간 평균 취업률 대비 -7% ~ -10% 미만 하락 = -3점 ⑦ 이전 3년간 평균 취업률 대비 -10% 초과 하락 = -4점 다. 학생취업연계(개인 실적, 건보DB실적 기준) <input type="checkbox"/> 취업연계 1인당 1점(상한 10점)					
	4-4 기타 4-4-1 실형실습실 및 기자재 관리(감점) 불량시 1개 항목 당 : -1점 - 기자재 무단 반출자 및 해당과 학과장 - 기자재 망실자 및 해당과 학과장 - 기타 실형실습실 관리 소홀 등					
	소계	40	0	0	0	0
	합 계	100	0	0	0	0
※ 전체배점(가산점 포함)인 120점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최종점수로 활용 함.						
	작성자	(인)	총 점 (120점 만점)		0	
	확인자	(인)				